

시진핑의 새 시대 실현을 위한 2018년 중국 헌법 개정안

윤 미연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I. 시작하며

현재 중국의 헌법은 당의 제11기3중전회에서 확립한 정책방안으로 1982년 12월 4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실행된 것이다. 1982년 헌법은 1949년 임시적으로 헌법 작용을 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 1954년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이기도 하다.

1982년 헌법이 공포된 후,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실천과 발전에 근거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1988년, 1993년, 1999년, 2004년까지 4차례에 거쳐 1982년 헌법, 31개 헌법 조문에 대하여 개정을 하였다. 4번의 개정은 중국공산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이루는 과정을 구현하였고 중국특색사회주의 길, 이론, 제도, 문화 발전의 성과이다. 때문에 헌법 개정은 항상 시대와 더불어 발전한 산물이고 당과 국가의 사업발전을 보장하였고 사회주의 법치건설을 추동(推動)하고 강화시켰다.⁰¹

또한, 중국공산당 제18차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려면 먼저 헌법에 따라 나를 다스려야 한다고 하였고 법에 의해 집정하려면 먼저 헌법에 따라 집정하여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다. 따라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⁰¹ 2018全国两会 | 王晨作, 宪法修正案（草案）的说明。

2018년 중화인민공화국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 왕천 헌법 개정안(초안)에 대한 설명.
신경보-재경채널, 2018년 3월 7일. http://finance.ifeng.com/a/20180307/16015035_0.shtml
http://www.gov.cn/xinwen/2018-03/06/content_5271523.htm

당과 국가의 정치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시진핑 총서기가 당이 새 시대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는 전략을 위해 내린 중대한 결정이며 전면적으로 의법치국을 실행하고 국가의 관리감독체계와 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대한 선택이기도 하다.⁰²

2018년 1월 18일, 19일,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는 <중공 중앙위원회 헌법 부분 내용의 수정에 관한 의견>을 심의하여 통과시켰다. 1월 26일, 중공 중앙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게 이를 제출하였고 1월 29일, 30일, 제12기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32차 회의를 소집하여 중공중앙위원회의 헌법 개정안 의견(초안)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청하여 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⁰³

중국의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중국의 헌법개정은 그 시기에 도달한 것이다. 이번 중국공산당 중공위원회의 헌법 수정 제안은 사회의 대대적인 호평을 받고 있다.

II. 개정안 의견의 주요내용

1. 과학발전관, 시진핑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이 국가정치와 사회생활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확립

헌법 개정안(초안)은 헌법 서언 제7단락⁰⁴의 “막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이론과 ‘3개대표’중요사상의 영도 하에”라는 구절 뒤에 “과학발전관, 시진핑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추가시켰다. 과학발전관은 당의 제16차 인민대표대회 이래 후진타오 전 주석의 주요 대표사상이자 당이 막스레닌주의 중국화의 최대의 성과라고 평가되는 사상이다. 또한, 시진핑 주석의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은 막스레닌주의 중국화의 최신 성과이며 중국정신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이는 전국 인민들이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는 이를 중국의 지도사상으로의 확립이 확실하여 헌법에 추가시켰다.

⁰² 위의 글, 참조.

⁰³ 遴选时政:《中华人民共和国宪法修正案（草案）》

http://bj.huatu.com/2018/0307/823495_3.html

⁰⁴ 중국 역대 지도자들의 핵심사상을 열거 한 것으로 중국 사회 발전의 지도 사상을 명시하였다.

2. 의법(依法)치국(治國)과 헌법(憲法)실시(實施) 방침을 개선

헌법 개정안(초안)은 헌법 서언 제7단락의 “사회주의법제”를 “사회주의법치”로 수정하였다. 사회주의 법제부터 사회주의 법치로의 변화는 당의 의법치국 이념과 방식의 새로운 도약이다.

동시에, 헌법 제1장 <총칙> 제27조에는 제3항을 추가하였다. “국가 공무원들은 취임 시, 반드시 법률 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헌법 선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국가 공무원들이 헌법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헌법원칙을 지키며 헌법정신을 고수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공무원들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지키자는 국가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할 것이다.

3. 애국통일전선과 민족관계에 대한 내용의 보완

헌법 개정안(초안)은 헌법 서언 제10단락에서의 “전체사회주의노동자, 사회주의사업의 건설자,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애국자와 조국 통일을 옹호하는 애국자들의 광범한 애국 통일 전선”을 “전체사회주의노동자, 사회주의사업의 건설자,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애국자, 조국통일을 옹호하는 애국자와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을 이바지하는 애국자들의 광범한 애국 통일 전선”이라고 수정하였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중국의 꿈(중궈명)은 전세계 중화아들딸들을 단결시키는 공통 분모가 되었다. 중궈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의 힘을 모아 공동으로 분투해야 한다. 때문에 전체 사회주의노동자, 사회주의사업의 건설자,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애국자, 조국통일을 옹호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바지하는 애국자들을 모두 단결시켜 위대한 중궈명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뜻이 담겨있다.

4. 평화외교정책을 풍부히 하다

헌법 개정안(초안)은 헌법 서언 제12단락에서의 “중국은 독립자주의 대외정책을 견지하고, 서로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며 서로 침범하지 않고 내정을 간섭하지 않으며 평등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다섯 가지 원칙” 뒤에, ”평화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서로 돋고 서로 개방하는 전략을 견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국제 형세의 변화를 정

확하게 장악하고 평화, 발전, 합작의 시대 흐름에 순응하려는 의지가 담겼다. 또한 국내외 두개의 큰 국면을 보아 거시적으로 중국의 발전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양호한 외부적 환경을 만들어 세계의 평화 발전에 공헌하고 싶다는 염원이 담겨있다.

5. 중국공산당 전면적인 영도의 견지와 그에 대한 강화

헌법 개정안(초안)은 헌법 제1장 <총칙>의 제1조 제2항의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뒤에 “중국공산당의 영도는 중국특색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라는 내용을 추가시켰다. 이는 중국공산당은 집정당으로서 국가의 최고 정치 영도 기관이고 중국특색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강조하면서 당과 국가의 사업이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을 마련해주었다.

6. 사회주의핵심가치관 내용의 추가

헌법 개정안(초안)은 헌법 제1장 <총칙> 제24조 제2항 “국가는 조국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며, 노동을 사랑하고 과학을 사랑하며, 사회주의 공덕을 사랑할 것을 제창한다.” 앞부분에 “국가는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제창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는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은 현시대 중국 정신의 가장 기본적은 구현이고 전국인민의 가치추구를 응결 시킨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은 당의 19차 회의의 정신을 관철하였으며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당과 전국인민, 모든 민족들이 공동으로 분투하는 사상 및 도덕의 기초로 자리매김 하도록 한다.

7. 구(区)를 설립한 시에서 지방 법규를 제정하는 규정을 증가

헌법 개정안(초안)은 구를 설립한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그 성, 자치구의 지방성 법규와 저촉하지 않은 전제하에 법 규정에 따라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그 성,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실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지방성법규 제정 주체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는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를 다스리고 경제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며 지방법규의 제정 행위를 규범화 하는데 이롭다고 평가된다.

8. 감찰위원회에 관한 규정 추가

감찰체제의 개혁과 감찰위원회의 설립에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안은 헌법 제3장 <국가기구> 제6절 뒤에 제7절 “감찰위원회”를 신설하였다. 감찰위원회 및 그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의 성질, 지위, 명칭, 구성, 임기, 영도체제, 작업 메커니즘 등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이는 당의 18차 회의 이후 국가 감찰체제 개혁의 성과이며 국가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직권의 새로운 변화와 그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부여한다는 것을 나타냈다.

9. 국가 주석 임직기간에 관한 규정

헌법 개정안은 헌법 제3장 <국가기구> 제79조 제3항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같으며 두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두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많은 지역과 부서, 당원 및 국민들은 헌법에서 국가 주석 임기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당의 제18기 제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와 당의 제19차 대표회의기간에 위원회 대표들이 강렬한 입장을 표명(表明)하였다고 한다. 당의 규장에는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헌법도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대하여 그 임기를 2번에 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헌법은 국가주석에 관한 규정도 상술한 규정에 따라 그 임기 횟수를 삭제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시진핑 주석을 핵심으로 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권위와 집중적이고 통일된 영도를 수호할 수 있게 하였고 국가의 영도체제를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III. 개정안 의의

한 나라의 헌법은 그 나라의 기본법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근거법이다. 또한 당과 인민의 의지를 구현하여 최고의 법적지위, 법적권위, 법적효력을 가진다.⁰⁵ 依法치국을 하자면 먼저 依憲치국을 해야 한다고 시진핑 총서기는 여러 차례 강조한바가 있다. 또한 헌법의 개정은 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중국특색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에 있어 필연적인 요구이다.

1954년 첫번째 헌법이 탄생으로부터 헌법은 많은 개선과정을 겪어 왔고 지금도 사회발전에 부응하고 시대와 더불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 헌법은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다.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새로운 형세와 새로운 임무에 앞서 헌법에 대한 적절한 개정은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고 지금이 바로 그 가장 적절한 시기이다. 또한 이는 헌법의 발전 규율에 부합되고 시대의 발전에도 부합된다는 것이 헌법 개정에 대한 중국의 목소리이다.

IV. 결론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내용과 비교하면, 한국은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려는 추세이지만 중국은 “삼위일체(三位一體)⁰⁶”의 영도체제를 강화하여 시진핑 주석의 권력집중을 강화하려는 추세이다. 감찰기관의 신설도 중앙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지방을 감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는 면이 있다.

나라마다 체계가 다르고 국정이 다르다. 미국 대통령과 러시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고 가정하고, 시 주석의 임기이래 대체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은 아마 대국(大國) 관계를 끌어갈 강력한 인물로 시 주석을 지목했을 수도 있다. 물론 고도의 권력집중으로 마오쩌둥 집권 후기처럼 독재의 부작용에 시달릴 가능성도 있어 중국에게도 도전적인 과제가 될 것이지만 장기 집권 하에 시 주석의 거친 외교행보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05 中国法院网。<http://www.chinacourt.org/article/detail/2018/03/id/3223298.shtml>

06 삼위일체란 중국공산당 총서기, 국가 주석, 군사위원회 주석을 한 사람이 그 권력을 장악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中国法院网 ,《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关于修改宪法部分内容的建议》

<http://www.chinacourt.org/article/detail/2018/02/id/3211383.shtml>

中国法院网 ,《为新时代坚持和发展中国特色社会主义提供有力宪法保障》

<http://www.chinacourt.org/article/detail/2018/02/id/3211429.shtml>

中国法院网 ,《宪法修改的重大意义》

<http://www.chinacourt.org/article/detail/2018/03/id/3223298.shtml>

中国法院网 ,《王晨作 ,关于《中华人民共和国宪法修正案 (草案) 》的说明》

<http://www.chinacourt.org/article/detail/2018/03/id/3219982.shtml>